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가단50619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

변 론 종 결 2021. 5. 27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/120 지분에 관하여 2016. 4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/1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6. 6. 17. 접수 제120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B은 2016. 7. 28. “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,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, 2012. 6. 8.경 사단법인 C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고, 그때부터 2013. 8.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52,241,880원을 지급받았다.”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. 1. 19.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위 B은 2016. 4. 29.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/120 지분(통틀어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6. 6. 17. 접수 제1202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위 B은 2016. 4. 29. 당시 다음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.

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 : 430,995,000원(감정결과)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/120 지분 : 54,264,240원(감정결과)③ 강원도 철원군 E 임야 중 6343/14608 지분 : 2,727,490원(개별공시지가)

④ 제주시 F 임야 : 6,000,000원(위 B의 2013. 5. 21. 매수금액)

라. 위 B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G에게, 2016. 6. 14. 위 강원도 철원군 E 임야 중 6343/14608 지분을, 2016. 6. 15. 위 제주시 F 임야를 각 증여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6. 8.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근거로 D요양병원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위 B으로부터 합계 971,215,1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,

감정인 H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매년 재산관계를 파악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. 6.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0. 3. 2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건강보험료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위 B의 범죄들은 성립한 상태에 있었고,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B이 기소되고 원고의 징수결정까지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징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(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. 또한

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인정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위 B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,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(2)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00,000,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 기준 감정가인 485,259,240원에 미치지 못하고, 을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, 당시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4억 원 후반에서 5억 원 정도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, ② 피고는 위 B의 처 J와 친목계원으로 서로 알고 지냈고, 위 J의 소개로 위 B과 피고가 2005. 12. 12. 각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/12 지분을 취득하였고, 이후로 각자의 지분을 함께 임대하여 온 점,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인 2016. 4. 29. 계약금 20,000,000원, 2016. 6. 17. 중도금 50,000,000원, 2016. 7. 29. 잔금 311,670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, 피고는 계약금 20,000,000원, 중도금 중 일부인 35,000,000원만

지급한 상태에서 2016. 6. 17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(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지분이라서 대출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),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위 B에게 2016. 6. 8. 15,000,000원은 1,000,000원권 자기앞수표 15장, 2016. 6. 30. 150,000,000원은 10,000,000원권 자기앞수표 15장, 2016. 7. 1. 50,000,000원은 1,000,000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, 쉽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새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3호증의 1, 2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나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.

(3)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민

별지 부동산 목록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1461㎡
2. 서울특별시 서초구 ,
[도로명주소]
서울특별시 서초구
철근콘크리트철골조
경량철골조 2층
자동차관련시설
지1 1066.18㎡
1층 216.15㎡
2층 216.15㎡

